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22
----------	-------

발의연월일 : 2023. 4. 12.

발의자 : 박형수 · 엄태영 · 김상훈
정경희 · 임이자 · 임병현
이종배 · 박성민 · 강대식
조명희 · 김미애 · 윤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경찰서는 조회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등 채용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직원의 채용) (생략) <u><신 설></u>	제8조(직원의 채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